|  |  |  |
| --- | --- | --- |
| **환경보호 대중참여 방법**  환경보호부령 제35호  <환경보호 대중참여 방법>이 2015년 7월 2일 환경보호부 부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천지닝(陳吉寧)  2015년 7월 13일  **제1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환경정보를 취득할 권리, 환경보호에 참여할 권리 및 환경보호를 감독할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 경로를 원활히 하며 환경보호 사업에 대한 대중참여의 적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보호법> 및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정책·법규의 제정, 행정허가 또는 행정처벌의 실시,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홍보·교육의 실시 등 환경보호 공공사무에 참여하는 활동은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제3조** 환경보호 사업에 대한 대중의 참여는 적법성, 질서성, 자발성, 편리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의견청취, 설문조사, 좌담회·전문가논증회·청문회 개최 등 방식으로 환경보호 관련 사항 또는 활동에 대한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할 수 있다.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은 전화, 서신, Fax, 온라인 등 방식으로 환경보호주관부서에 의견과 건의를 제안할 수 있다.  **제5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1) 관련 사항 또는 활동의 배경자료;  (2) 의견청취 시작시간과 마감시간;  (3) 대중이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는 방식;  (4) 연락부서와 연락방식.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은 의견청취 시한 내에 서면으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의견청취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사항의 기본 정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설문조사의 설문은 간단하고 명확하며 통속적이고 알기 쉬워야 한다. 조사대상 인수와 그 범위는 관련 사항 또는 활동의 영향폭과 영향도, 사회의 관심도, 대중의 참여에 필요한 인력·물력자원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해야 한다.  **제7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의견청취를 위한 좌담회·전문가논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장소, 시간, 의제, 일정 등 사항을 참가자에게 사전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 웹사이트, 주요 언론매체 등 경로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전문가논증회 참가자는 관련 전문분야의 전문가, 환경보호 사회조직의 전문인사를 위주로 해야 하며 아울러 관련 사항 또는 활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대표도 초청하여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는 사항의 경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사회에 공고하고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공개성, 공평성, 공정성, 대중편리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하며 공민, 법인과 대중의 의견진술권, 교차질문권, 해명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기밀, 상업기밀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연관된 경우를 제외하고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9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를 유형별로 정리 및 분석연구해야 하고 환경 관련 의사결정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에게 피드백해야 한다  **제10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환경보호 공공사무에 대한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여론감독 및 사회감독을 지지하고 격려한다.  **제11조**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의 환경오염 행위 및 생태파괴 행위를 발견한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은 서신, Fax, 이메일, '12369' 환경보호 신고전화, 정부 웹사이트 등 경로를 통해 환경보호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제12조** 지방 각 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은 그 상급 기관 또는 감찰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13조** 신고를 접수한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신고 사항을 조사 및 확인해야 하며 조사경과와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4조** 신고를 접수한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신고인 관련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함으로써 신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15조**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 실적이 뛰어난 조직과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장려한다.  국가는 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의 환경보호 신고포상 특별자금 설치를 추진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16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법률자문 제공, 서면의견 제출, 조사·증거수집 협조 등 방식으로 법정(法定) 조건을 충족시키는 환경보호사회단체가 법에 따라 제기하는 환경공익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그 직책범위 내에서 홍보·교육 업무를 강화하여 환경과학 지식을 널리 보급하고 대중의 환경보호 의식과 절약 의식을 제고시켜야 하며; 대중이 녹색생활·녹색소비를 자발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저탄소, 자원절감 및 친환경의 사회풍기를 조성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제18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프로젝트 자금 지원, 서비스 구매 등 방식으로 사회단체의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참여를 지원하고 유도할 수 있다.  **제19조** 법률, 법규와 환경보호부가 제정한 기타 부문규장에 대중의 환경보호 참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이 방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环境保护公众参与办法**  环境保护部令第35号  　　《环境保护公众参与办法》已于2015年7月2日由环境保护部部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15年9月1日起施行。  部长 陈吉宁  2015年7月13日  **第一条** 为保障公民、法人和其他组织获取环境信息、参与和监督环境保护的权利，畅通参与渠道，促进环境保护公众参与依法有序发展，根据《环境保护法》及有关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公民、法人和其他组织参与制定政策法规、实施行政许可或者行政处罚、监督违法行为、开展宣传教育等环境保护公共事务的活动。  **第三条** 环境保护公众参与应当遵循依法、有序、自愿、便利的原则。  **第四条** 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通过征求意见、问卷调查，组织召开座谈会、专家论证会、听证会等方式征求公民、法人和其他组织对环境保护相关事项或者活动的意见和建议。  　　公民、法人和其他组织可以通过电话、信函、传真、网络等方式向环境保护主管部门提出意见和建议。  **第五条** 环境保护主管部门向公民、法人和其他组织征求意见时，应当公布以下信息：  　　（一）相关事项或者活动的背景资料；  （二）征求意见的起止时间；  （三）公众提交意见和建议的方式；  　　（四）联系部门和联系方式。  　　公民、法人和其他组织应当在征求意见的时限内提交书面意见和建议。  **第六条** 环境保护主管部门拟组织问卷调查征求意见的，应当对相关事项的基本情况进行说明。调查问卷所设问题应当简单明确、通俗易懂。调查的人数及其范围应当综合考虑相关事项或者活动的环境影响范围和程度、社会关注程度、组织公众参与所需要的人力和物力资源等因素。  **第七条** 环境保护主管部门拟组织召开座谈会、专家论证会征求意见的，应当提前将会议的时间、地点、议题、议程等事项通知参会人员，必要时可以通过政府网站、主要媒体等途径予以公告。  　　参加专家论证会的参会人员应当以相关专业领域专家、环保社会组织中的专业人士为主，同时应当邀请可能受相关事项或者活动直接影响的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代表参加。  **第八条** 法律、法规规定应当听证的事项，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向社会公告，并举行听证。  　　环境保护主管部门组织听证应当遵循公开、公平、公正和便民的原则，充分听取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意见，并保证其陈述意见、质证和申辩的权利。  　　除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或者个人隐私外，听证应当公开举行。  **第九条**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对公民、法人和其他组织提出的意见和建议进行归类整理、分析研究，在作出环境决策时予以充分考虑，并以适当的方式反馈公民、法人和其他组织。  **第十条** 环境保护主管部门支持和鼓励公民、法人和其他组织对环境保护公共事务进行舆论监督和社会监督。  **第十一条** 公民、法人和其他组织发现任何单位和个人有污染环境和破坏生态行为的，可以通过信函、传真、电子邮件、“12369”环保举报热线、政府网站等途径，向环境保护主管部门举报。  **第十二条** 公民、法人和其他组织发现地方各级人民政府、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不依法履行职责的，有权向其上级机关或者监察机关举报。  **第十三条** 接受举报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依照有关法律、法规规定调查核实举报的事项，并将调查情况和处理结果告知举报人。  **第十四条** 接受举报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对举报人的相关信息予以保密，保护举报人的合法权益。  **第十五条** 对保护和改善环境有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依法给予奖励。  　　国家鼓励县级以上环境保护主管部门推动有关部门设立环境保护有奖举报专项资金。  **第十六条** 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通过提供法律咨询、提交书面意见、协助调查取证等方式，支持符合法定条件的环保社会组织依法提起环境公益诉讼。  **第十七条**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在其职责范围内加强宣传教育工作，普及环境科学知识，增强公众的环保意识、节约意识；鼓励公众自觉践行绿色生活、绿色消费，形成低碳节约、保护环境的社会风尚。  **第十八条** 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通过项目资助、购买服务等方式，支持、引导社会组织参与环境保护活动。  **第十九条** 法律、法规和环境保护部制定的其他部门规章对环境保护公众参与另有规定的，从其规定。  **第二十条** 本办法自2015年9月1日起施行。 |